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5193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성 담당변호사 서정배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C가 2020. 1. 13.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장(액면금 230,000,000원)의 발행행위를 70,3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5.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708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3. 5. 16. ‘C는 원고에게 107,986,270원 및 그 중 32,633,5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31. 확정되었다.

나. C는 2020. 1. 13. 피고에게 액면금 23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행행위’라 한다), C와 피고는 같은 날 법무법인 D 증서 2020년 제23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1.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744호로 C가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 및 상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 1. 23.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20. 1. 30.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다.

라. E은 2020. 3. 10.부터 2021. 4. 9.까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70,32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전부금 수령내역 기재와 같다.

마. C는 이 사건 발행행위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은 없었고, E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20. 1. 30. 제3채무자인 E에게 송달되었는바,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발행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8.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1. 30.경 이 사건 전부명령이나 이 사건 발행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발행행위를 하고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 채무자인 C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발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발행행위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와 피고는 서로 남매지간인 점, ② 이 사건 발행행위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행위는 2020. 1. 13.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 21. 이 사건 전부명령을 신청한 점,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발행행위의 원인이 된 채권이 1990년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채권에 대한 지급요청이나 법적인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발행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와 원고의 합의 주장

피고는, C와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다만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21. 9. 28.부터 2022. 5. 27.까지 원고에게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E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0,325,000원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발행행위를 70,32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별지

전부금 수령내역

번호	날짜	금액	비고
1	2020. 3. 10.	5,422,500	
2	2020. 4. 10.	5,422,500	
3	2020. 5. 8.	6,980,000	
4	2020. 6. 10.	5,000,000	
5	2020. 7. 10.	5,000,000	
6	2020. 8. 10.	5,000,000	
7	2020. 9. 10.	5,000,000	
8	2020. 10. 8.	5,000,000	
9	2020. 11. 10.	5,000,000	
10	2020. 12. 10.	5,000,000	
11	2021. 1. 8.	5,000,000	,
12	2021. 2. 10.	5,000,000	
13	2021. 3. 10.	5,000,000	
14	2021. 4. 9.	2,500,000	
	합계	70,325,000	

1) 원고는 소장에서 C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3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C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으로 70,32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취소와 관련하여 '70,325,000원의 범위 내에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택하기로 한다.